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811 발의연월일: 2022. 6. 7.

발 의 자 : 홍석준 · 김용판 · 지성호

김태호 · 김예지 · 김형동

윤창현 · 조명희 · 이종배

임병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. 하지만,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,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,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,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4조 및 제36조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호 중 "손해를 가할 목적으로"를 "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및 제6호의2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각각 "사용될 것을 알면서"로 한다.

제36조제1항 전단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"사용될 것을 알면서"로, "3년"을 "5년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15억원"을 "30억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되게 할 목적으로"를 "사용될 것을 알면서"로, "15년"을 "20년"으로, "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"를 "징역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| 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|
| 행위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| 행위 금지)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| |
|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 | 2 |
| 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 | |
|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| |
|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 | |
| 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<u>손해</u> | <u>손</u> 해 |
| 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 | 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|
| 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 | |
| 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| |
| 사용하게 하는 행위 | |
| 3. ~ 5. (생 략) | 3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6.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 | 6 |
| 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적</u> | <u>사용될 것을 알면서</u> |
| <u>으로</u>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| |
|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 | |
|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| |
| 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 | |
| • 합병등을 하는 행위 | |
| 6의2.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| 6의2 |

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</u> 적으로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·합병등을 하는 행위

6의3. ~ 8. (생략)

제36조(벌칙) ① 국가핵심기술을 지외국에서 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</u>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<u>3년</u>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.

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적으로</u> 제14조 각 호(제4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(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)는 15년 이하의 <u>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</u> 처한다. <<u>수단 신설></u>

③ ~ ⑧ (생 략)

| <u>사용될 것을 알</u>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면서 |
| |
| |
| |
| |
| |
| 6의3. ~ 8. (현행과 같음) |
| 세36조(벌칙) ① |
| <u>사용될</u> |
| <u> 것을 알면서</u> |
| |
| <u>5년</u> |
| |
| - <u>30억원</u> |
| |
| 2 |
| <u>사용될 것을 알면서</u> |
| |
| |
| |
| |
| <u>20년</u> <u>징역에</u> |
|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|
| 병과한다. |
|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|